

부산지방법원 2024. 11. 26 선고 2024가단345425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시그니처

담당변호사 홍성애

피고B

변론 종결2024. 11. 12.

판결 선고2024. 11. 2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.

가.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

나. 1,500,000원과 2024. 7. 24.부터 위 가.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,000원의
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반호림

별지